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한규의원·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63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김한규·조은희·장철민
문대림·진선미·임미애
이연희·황운하·진성준
김태년·박상혁·복기왕
김정호·위성곤·김용태
이달희·강준현·이주희
박정현·김원이·임호선
정진욱·김준혁·이인선
한지아·양부남·최혁진
이소영 의원(28인)

제안이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단순히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자이자 상담가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임.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우수 인력의 현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된 청소년지도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인권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 등을 신고한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시설 등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보수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보수 지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5조(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3.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제6조(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등) ①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이하 “청소년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청소년시설등의 장은 청소년지도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
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
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
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